



피츠버그 교구

## 목회자 윤리 규정

발행일: 2003 년 8 월

개정일: 2008 년 6 월

본 목회자 윤리 규정은 2003년 3월 17일 버전에 근거하며 Catholic Risk Retention Group 사가 본 윤리규정을 제공했습니다. 피츠버그 교구는 모델을 제공하고 그 모델을 규정의 근거로 사용함을 허락해 주신 Catholic Risk Retention Group 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성직자 및 피츠버그 교구의 성직자님 그리고 평신도님:

사도바울은 지역 교회 임원 과 각 신도에 보내는 고린도 첫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전 16:13-14)

2003 년 8 월에 피츠버그 교구는 목회자 윤리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취임 문서는 피츠버그 주교와 관련된 모든 관련인에게 기대하는 사항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교회의 전 성직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본 목회자 윤리 규정은 성직자 및 기타 전 교회 임원들에 대한 성직자 행동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주교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직한 응답입니다. 이 문서는 교회 임원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로 그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주교, 사제, 부제, 종교인에 적용되며 목회를 보조하는 충실한 기독교 교인에 그 기저를 설립합니다. 본 규약은 교회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기대하는 사항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규약은 저희들의 교구의 모든 교회 임원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기대하는 간결하나 철저하게 서술된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츠버그 교구의 주교로서 교회 봉사를 위임한 모든 관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귀하의 의향과 술선 수범으로 교회에 봉사함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면 수락은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에 동조하는 귀하의 헌신적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봉사자로서 그 삶을 추구함으로써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거룩하고 뜻뜻한 증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함께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 우리들의 믿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안에서 저희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임을 상기합니다.

대사제 데이빗 주빅 (David A. Zubik) 피츠버그 교구 주교

2008 년 6 월 21 일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청년 수호성인

피츠버그 주교 관구  
교회임원 윤리 규정

목차

교구주교 서신

I. 서문.....	1
II. 책임성 .....	1
III. 목회 기준 .....	1
1. 목회 상담 및 영적 방향에 대한 지도 .....	1
2. 비밀 유지.....	3
3. 청소년과 상담 진행.....	4
4. 성적행위 .....	5
5. 희롱.....	6
6. 기록 및 정보.....	7
7. 이해상충.....	8
8. 위법행위 보고.....	9
9. 관리.....	10
10. 교회 임원 복지.....	10

부록: 규약 위반에 대한 적법 절차 (Procedural Guidelines for Violation of the Code)

목회자 윤리 규정 접수 답신 (Acknowledgement of Receipt of the Code of Pastoral Conduct)

\*

본 목회자 윤리 규정의 목적상, 용어 “교회 임원”은 피츠버그 주교 관구나 행정교구 후원(보호)하에 교회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각 개인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성직자, 부제, 신학대학생 그리고 비전문인 및 피츠버그 교구가 교용한 봉헌생활자 또는 피츠버그 주교관구나 또는 피츠버그 교구에 대해 또는 주교 관구내의 어느 교구에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 I. 서문

모든 교회임원은 카톨릭교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행동실천 해야 합니다. 이 목회자 윤리 규정은 충실한 기독교인과 다른 모든 인들이 목회자 돌봄을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데 있어서 행동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규약은 기대, 표준, 또는 요구 사항의 철저한 목록을 제공하는 대신 교회의 보편적법, 시민법 및 교구 정책을 동반합니다. 교회 임원이 목회행위를 통치하는 규범을 인식하고 이행하는데 있습니다.

## II. 책임성

교회임원의 공공 및 사적인 행동은 일반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거나 일반인의 믿음을 추문화 및 약화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임원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책임성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역을 이행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또한 역사하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 III. 목회 기준

### 1. 목회 상담 및 영적 방향에 대한 지도

목회적 상담 또는 영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교회임원은 개개인의 복지 발전 및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1.1 교회임원은 상담 시 그들의 능력의 한도에서 상담을 제공하며 합당한 경우 상담 의뢰인이 다른 전문가의 도움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전문가에 조회 및 천거 합니다.

1.2 교회임원은 기존 관계 (직원, 동료, 친구 또는 기존관계 등)과 있는 개개인과 상담관계에 들어갈때는 유발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7.2.2 항 참조]

1.3 교회임원은 상담시간을 녹음하거나 비데오로 녹화해서는 않됩니다.

1.4 교회임원은 상담 의뢰인과 성적인 관계를 해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합의적 및 비합의적 접촉, 강압적인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성적발언 등이 포함됩니다.

1.5 교회임원은 상담 및 상담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있어서 명확하고, 합당한 경계선을 설립 및 유지하는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1.6 교회임원과 상담 의뢰인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만지거나 껴안음 및 잡음 등)은 불신임 (오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1.7 (상담을 위한) 모임은 적절하게 시간에 적절한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1.7.1 모임은 사적인 숙소에서 이행되어서는 않습니다.

1.7.2 모임은 상담 의뢰인과의 관계 자체에 혼란을 초래하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개최 되어서는 않습니다.

1.8 목회적 상담 및 영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교회임원은 각 상담의뢰인과 모임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2 비밀 유지

교회임원은 취득한 상담, 조언, 또는 영적인 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엄격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2.1 개인 및 단체 상담 시 취득한 사항들은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1.1 상담의뢰인 또는 기타 관련인에게 명확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회임원은 가해를 입을 당사자를 보호하고 가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를 누출할 수 있습니다.

2.2 교회임원은 각 상담 의뢰인과 비밀유지의 본질 및 제한성에 대하여 논의 합니다.

2.3 교회임원은 모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록을 유지합니다.

2.4 전문가와 문의 시 습득한 지식은 의뢰인의 신분 및 노출 사항의 비밀 유지에 대한 유호한 절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 교육, 집필, 설교 및 공적인 발표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5 공식적인 상황에서 미성년자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 상담시, 교회임원이 미성년자의 복지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발견 한 경우, 비밀사항을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전달함이 미성년자의 건강과 복지 (웰빙)에 극히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회임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로부터 특정한 사항을 누출한에 대한 서면 동의서 취득을 시도하거나
-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복지 및 건강을 보호하는 정보에 한하여 누출함. 누출 전 직속 관리자 등과 같은 적절한 교회 책임자와의 협의를 함.

이러한 의무는 고백성사 비밀유지와 별개의 것입니다. 신부는 참해자의 승인이 있어도 고해성사의 내용을 결코 누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모든 내용이나 그 이외의 경우 (우연히 듣게 됨 등)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소지한 기타 관련인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법(Canon) 983)

### 3. 청소년과 상담 진행

청년을 다루는 교회임원은 청소년과 성인 관리인 사이에 개방적이고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3.1 교회임원은 청소년과 홀로 일할때 그들 자신과 기타 관련인들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임원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관리할 때 팀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 3.2 청소년과의 신체적 접촉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가) 전적으로 비성적이며, 나) 달리 합당한 경우, 다) 공공 장소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무관합니다.
- 3.3 교회임원은 청소년과 함께 업무 수행 시 가) 술을 마실 수 없으며 나) 불법적인 약물 사용 및 소지는 금지 사항입니다.
- 3.4 교회임원은 청소년 개개인과 사적으로 하룻밤 숙박시설을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해당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하는 시설, 개인집, 호텔 방 또는 또 다른 성인의 감시가 없는 기타 장소가 그 보기에 속합니다.
  - 3.4.1 간혹 비상 시, 청소년의 안녕과 건강상 필요한 경우, 교회임원은 숙박시설을 공유해서 부정합 모습 및 피해의 위험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를 보호하는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 3.4.2 팀 접근 방식이 비상사태를 관리하는데 사용됩니다.

#### 4. 성적행위

교회임원은 성적인 혜택 및 친밀감 등을 위하여 신앙 공동체가 전가한 신뢰를 악용해서는 않습니다.

4.1 종교적 이유로 독신주의자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교회임원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항상 독신과 순결 (정결)의 본보기로 불리어 집니다.

4.2 목회자 상담 및 영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교회임원은 미성년자, 기타 교회임원 또는교인과 부적절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음을 금지사항입니다. 교회임원은 언제나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합니다.

4.3 교회임원은 다른 개인을 성적인 의도로 착취해서는 않습니다.

4.4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적남용에 대한 혐의는 매우 중대하게 간주되며 관련 행정 당국 및 교회 기관에게 즉시 보고를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4.5 성인이 관련된 성적인 비행 (성적인 남용, 착취 또는 성희롱 등)에 대한 혐의는 매우 중대하게 다루며 관련 교회 당국자에 보고하며 그 당국자는 관련 행정 당국에 또한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4.6 성적인 비행 및 남용에 대한 주교 관구의 정책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4.7 교회임원은 아동 학대 규정사항 및펜실베니아 주의 보고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인식하여 그 지시를 따릅니다.

#### 5. 희롱 (괴롭힘)

5.1 교회임원은 육체적, 정신적, 서면, 또는 구두 협박 또는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는 전문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5.2 희롱은 육체적, 서면 또는 구두 협박 등의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며 다음에 제한되지 않는 사항들 입니다:

- 육체적 및 정신적 남용;
- 인종 모욕
- 다른 민족에 대한 중상 비판
- 원하지 않는 성적요구 및 만짐
- 성적 농담 및 언급



- 고용의 조건으로 성적인 호의를 요구함, 또는 승진 또는 보상의 조건으로 성적인 호의를 요구거나 또는 묘욕적인 자세를 보임

희롱은 단 한번의 심각한 사건 또는 지속되는 행동양식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나 그러한 행위의 의도가 모욕적, 적대적 또는 협박적인 작업환경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5.3 희롱 혐의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목회자, 교장, 교리 관리자, 또는 성직자, 교구목사, 또는 교육부 총무 등 합당한 교회 기관에 즉시 보고 합니다.

5.4 주교관구 정책은 모든 관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 6. 기록 및 정보

교회기록의 생성, 저장, 이용, 전송, 그리고 제거 하는데 있어서 그 비밀성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6.1 성찬 기록은 비밀사항으로 간주 됩니다. 성례기록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통계 발표시 각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2 성찬 기록은 기록이 생성된 날로부터 100 년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0 년 후 성례기록에 포함된 정보 사용은 (기록 자체는 사용할 수 없음) 주교 관구의 정책에 의거하여 그 접근이 가능합니다.

6.2.1 입양 및 적법 등에 관한 정보는 나이에 무관하여 비밀로 유지됩니다.

6.2.2 기록 접근이 인가되고 그 사용을 감독받고 있는 교회임원에 한하여서 좀더 최근 기록에 대한 요청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6.3 교구의 재정기록은 비밀사항 입니다. 재정 정보는 매년 요약되어서 교구 재정 위원회에 제공됩니다. 주교 관구 재정 정책은 관망의 대상입니다. 재정 기록 방출에 관한 사항을 민사 법률 서비스 사무실이 접수 시 주교 관구에 연락을 취합니다.

6.4 개인별 기부 기록은 사적인 사항으로 간주되며 비밀로 유지됩니다.

## 7. 이해 상충

교회임원은 이해상충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단지 외관상 이해상충 유발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상황도 정직성 및 전문가다운 행동에 의문을 초래할 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1 교회임원은 향후 잠재적으로 이행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요인에 대하여 적합한 교회 권위자 (직속 상관 등)에 보고 해야 합니다.

7.2 교회임원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발생 시 모든 당사자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성직자 서비스를 접수받는 개인을 보호하는 의도입니다.

7.2.1 교회임원은 향후 그들의 개인적, 정치적, 또는 사업상 이득을 위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을 이용해서는 않됩니다.

7.2.2 교회임원은 그들과 사업상, 직업상, 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개인에 한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않됩니다. 이를 회피할 구 없는 상황인 경우, 상담위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합당한 테두리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7.2.3 사전 사적 및 상업적 관련이 있는 두 명 및 그 이상의 개개인에 목회자 상담 또는 영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경우, 교회임원은 다음 사항을 주시하고 이행합니다:

- 모든 당사자에 각 관계의 실체를 명확하게 하며,
- 이행상충의 가능성을 예상하며,
- 상충을 유발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 서비스 지속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로부터 서면동의안을 취득함

7.3 이해상충은 교회임원의 자주적인 판단이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거래,
- 사적으로 연루되었거나, 또는
- 기타의 개인에 맞서 특정한 개인을 옹호하게 된 경우.

## 8. 위법행위 보고

교회임원은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윤리적 및 전문 위법 행위를 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8.1 교회임원은 최고의 윤리 및 전문적 기준 (스탠다드)를 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임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려는 조짐이 보일때, 교회임원은 합당한 민정 당국 및 민사 법률 서비스 관장 교구나 지역교구에 신속히 보고 해야 합니다.

8.2 처한 상황 또는 행동이 목회자 윤리 규정, 다른 종교, 도덕적, 윤리적 원칙 등을 위반하는지 또는 확실치 않은 경우, 교회임원은 적합한 교회 권위자 (직속 상관 등)에 상의 합니다.

8.3 교회임원이 목회자 윤리 규정, 다른 종교, 도덕적, 윤리적 원칙 등을 위반한 것 같은 경우, 그 사안을적합한 교회 권위자 (직속 상관 등)와 상의 합니다.

8.4 상담자의 위법행위를 보고해야 하는 교회임원의 의무는 비밀유지 의무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어떤 합의사항 또는 의무도 그 위법행위가 2.5 항에 제공된 사항을 제외한 이에 연루된 개개인의 안녕 또는 안전, 건강을 해치는 경우 그 위법행위를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9. 관리

교용주 및 감독관은 교회임원이 각 부처에서 매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이를 배려합니다.

9.1 교회임원에 의한 임원 및 기타 행정상 결정은 민사 및 교회법(canon law) 의무에 순응하고 카톨릭 교회의 사회적인 가르침과 본 목회자 윤리 규범을 반영해야 합니다.

9.2 교회임원은 자신의 신분을 사용하여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권력과 권위를 남용해서는 않됩니다.

## 10. 교회 임원 복지

교회직원은 그들 자신의 영적, 육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인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0.1 교회임원은 자신들의 영적, 육체적, 정신적, 및/또는 정서적인 건강에 대한 잠재적 문제를 나타내는 경고 징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10.2 교회임원은 그들 자신의 전문적인 직종 그리고/또는 사적인 생활상 행동 또는 정서적 경고를 주목했을 때는 즉시 도움을 추구합니다.

## 부록

### 목회자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적법 절차

- 가. 교회임원 또는 자원 봉사자의 직속상사 (교장 또는 교리문답 관리자) 직원 또는 봉사자의 목회자 윤리 규정을 위반혐의가 있다 정보를 입수했을 때, 직속상사는 신속하게 관련 종교의 권위자 (교구인 경우 목회자가 이에 해당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나. 목회자가 목회자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혐의 받고 있는 또는 어떤식으로 연루된 경우, 이는 피츠버그 주교 관구의 유니버설 교회법 정책에 의거하여 교구 목회자가 이를 취급하게 됩니다. 사역의 책임자인 합당한 교구 주교와 상의 해야 합니다.
- 다.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 수신 시, 관련 종교의 권위자 (목회자 또는교구 목회자)가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합당한 종교의 권위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를 다른 적합한 당사자에게 위임합니다. 조사가 실시된 경우, 서면으로 된 파일이 설립됩니다. 조사는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와의 인터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혐의 피해자 또는 혐의 가해자에 의하여 확인된 목격자와의 인터뷰를 포함합니다. 교구 목회자는 학장과 협의하고 특정한 사역의 책임자인 관련 교구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 이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 적절한 행동을 취합니다.
- 라. 사실에 대한 분석 및 결론에 근거한 시정 조치의 적절한 사항이 시행됩니다. 준수하지 않음이 명백한 불복종으로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관련 사항을 특정한 기간이내에 준수 및 이행해야 한다는 구두경고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구두경고가 주어짐에도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준수함이 요구되는 특정한 날짜와 그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통지가 주어집니다. 서면통지에는 특정한 날짜까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성적 및 직책에서 파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각 개인은 서면 경고에 기재된 특정한 날짜까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성적 및 직책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마. 위법행위 혐의로 피해를 당한 개개인 또는 피의자가 절차 또는 조사에서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결과를 확정하였거나 그러한 근거가 결점있거나 불완전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개개인이나 피의자는 행정절차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피츠버그 교구 적법절차에 따라 상기의 확정 사항에 대한 호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목회자 윤리 규정 접수 답신

예수그리스도 복음의 증거자로, 교회임원으로서 그 역할에 따라, 본인은 진실하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규율에 일치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행합니다. 본인은 민법과 교회법, 피츠버그 교구의 정책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목회자 윤리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행동합니다.

1.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담, 조언 또는 영적 방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복지를 추구합니다.
2. 상담, 조언 또는 영적 방향을 제공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비공개 비밀을 유지합니다.
3. 미성년을 대하는데 있어서 그들에게 해를 끼칠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삼가하며 동시에 신뢰할 수 있고 개방된 관계를 유지합니다.
4. 교회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교회임원은 교회를 성적인 밀회 장소로 사용해서는 않됩니다.
5. 육체적, 정신적, 서면 또는 구두의 협박이나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는 전문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6. 교회와 관련된 기록을 생성, 보관, 사용, 이전 그리고 폐기시 비밀사항을 유지합니다.
7. 이해상충을 유발 시킬수 있는 상황을 피합니다.
8. 본인의 윤리적 및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그리고 다른 개개인의 위배행위를 적합한 해당 당국에 보고합니다.
9. 각 부처에서 매일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임원을 정당하게 대우해 줍니다.
10. 교회임원은 자신들의 영적, 육체적, 정신적, 및/또는 정서적인 건강을 책임 집니다.

본인은 신중하게 읽고 이해를 했으며 여기에 본인은 신부, 부제, 신학대학생, 교회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교구 목회자 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행동을 합니다.

---

(성명)

---

(교구, 학교, 사무실 또는 프로그램)

---

(직위)

---

(날짜)

서명한 원본 한 분을 지역 교구 및 교구에 반납합니다.

Diocese of Pittsburgh  
111 Boulevard of the Allies  
Pittsburgh PA 15222  
(c) 2008